



제 429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제총기 정의 신설 및 사제총기의 제작 등 금지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03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제충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항)	3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제조방법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조의2)	6
3. 사제충기의 제작 금지(안 제19조의2)	10
4. 역외범에 대한 적용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24.
3. 회부연월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제총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항)

개정안 제2조제8항은 총포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작한 총포를 사제총기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 ⑦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이 법에서 “사제총기”란 총포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직접 조립하거나 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총포를 말한다.</u>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¹⁾은 총포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총포 등을 제조하지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총포를 사제총포라는 용어로 개념 정의함으로써, 총포를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다 용이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제2조제8항에서 신설하는 사제총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2)에서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2조제8항의 사제총기 중 사제(私製)는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다는 의미³⁾이므로 해당 표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제조하는 방위산업 기업 등이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허가를 받고 제조된 총기도 사제총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제(私製)와 대비되는 단어인 관제(官製)총기의 개념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제총기 개념을 별도로 정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제조방법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조의2)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u>총포·화약류</u>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① ----- <u>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u> ----- ----- ----- ----- ----- ----- ② 제1항의 행위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하며, 이를 번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 ~ 7. (생략)	<u>복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제72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의2는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은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칙 규정을 제71조부터 제73조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의2제3항 내용을 제71조 등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 제8조의2제3항 단서는 해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은 총포 제조 방법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해당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8조의2제1항 금지 규정은 총포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⁴⁾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4) 참고로, 벌칙의 요건에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예시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46조제3호의2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 ~ 7. (생략)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 11. (생략)

② (생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제총기의 제작 금지(안 제19조의2)

개정안 제19조의2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조립·가공하거나, 3D프린터·기계 장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사제총기의 제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거나, 3D프린터·기계 장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등의 유통 금지)에 따른 정보 유통 행위와는 별도로, 타인을 위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물리적 제작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제작 목적이 테러, 강력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기 등을 직접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2호⁵⁾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조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처벌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사제총기 제작 및 인터넷을 통한 제조방법의 게시·유포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총기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미 사제총기를 포함한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온라인을 통한 제조 방법 등의 게시·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유포행위의 형량은 현행법(제72조제1호의2) 보다 상향하는 반면, 이보다 중한 사제총기 제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제70조제1항제2호) 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을 규정하여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자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역외범에 대한 적용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개정안 제19조의3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외국에서 행해진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되었거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3(역외범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외국에서 행하여졌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되었거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포 또는 화약류를 이용한 위해 행위를 유발한 경우 2. 총포 또는 그 부품의 설계도, 조립정보, 제작파일 등을 국내에 허가 없이 게시·전송·제공한 경우 3. 사제총기 제작 목적의 총포 부품 또는 정보 등을 국내로 허가 없이 유통·전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이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며, 관할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또는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⁶⁾ 법원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⁷⁾

위 판례에 따르면, 개정안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총포의 설계도 등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 등의 범죄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총포의 조립 등의 정보를 국내에 국내에 허가 없이 게시한 경우 등에 대해 역외범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6)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역외범이 있는 외국에서 총포의 조립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역외범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는 2020년 6월 9일에 신설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⁸⁾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게시한 총포 제작 정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나,⁹⁾ 해당 외국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 경찰은 그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경찰이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신설될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역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규정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이 될지 여부는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함.¹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예) 해당 총포 제작 정보 게시물이 우리나라 안에서 재유포되는 경우 등

참고로, 경찰청은 외국인이 총포의 조립 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해당 국가에 법률에 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역외 적용에 관한 개정안을 신설하는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10) 제377회국회(임시회) 제1차(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15면~16면